

# WTO/TBT 협정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EU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D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한 제품시장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각국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의 공업표준에 개별적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국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품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제한적 효과를 낳음으로써 잠정적인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 기술규정, 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 WTO/TBT 협정의 체결

GATT체제 밸류아래 무역상기술장벽이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79년 4월 12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한 후 이듬해인 '8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협정 가입국가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8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에는 '80년 10월 2일 가입하였다.

이후 '86~'94년간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GATT체제가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협정이 WTO/TBT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99년 5월 현재 WTO/TBT 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134개국이다.

##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및 표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생산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 동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이들 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 ●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

체약국들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민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정 체약국이 기술규정과 표준을 개발할 경우, 관련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할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단 자국의 기후조건, 지리적 요인, 국가안보, 보건 위생, 환경보호 등에 따른 예외는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특정 체약국이 기술규정과 표준을 개발할 경우, 관련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을 때는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사무국을 통하여 타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안보, 보건 및 환경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들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실제적용 사이에 합리적인 시차를 둘으로써 수출국, 특히 개도국인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생산방법 또는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

#### ●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용

수입상품의 검사조건, 방법, 행정절차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체약국들은 가능한 한 타체약국 영토내에 있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나 인증서 또는 타체약국 생산지가 발행한 지기적합성 인증서를 인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정토록 한다.

#### ○ 인증제도

인증제도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체약국들은 채택하려는 인증제도를 공표하고 WTO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 타체약국에 이 제도에 관한 내용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 ○ 정보 및 기술지원

모든 체약국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안하였거나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에 대한 타체약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1개 또는 수개의 질의처(Enquiry Point)를 두도록 한다.

WTO사무국에 대한 통지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하여야 한다. 체약국들은 개도국의 국가표준화기구 설립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참여에 관하여 조언하며,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 개도국 우대조항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비록 국제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개도국의 특수한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토착기술과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도국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않은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가 개도국

의 수출증대와 시장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 분쟁해결

협정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장벽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반(Working Parties),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s Group), 조사단(Panel)을 설치할 수 있다.

체약국의 일방이 본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했거나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때 상대국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만족할 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을 못했을 경우 위원회는 기술적인 문제검토를 위한 기술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며, 이 그룹은 사실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한다.

이 과정에서도 상호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단은 기술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기초로 가능한 설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조사단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판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계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료제공 · 기술표준원